

# 예산총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| 307,244,000 | 9,217,320 |
| 일반회계          | 304,000,000 | 9,120,000 |
| 특별회계          | 3,244,000   | 97,320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| 3,244,000   | 97,320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| 607,000     | 18,210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| 80,000      | 2,400     |
|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  | 2,351,000   | 70,530    |
|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  | 206,000     | 6,180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630,926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2,658,155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620,000천원, 내부유보금 352,771천원)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